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기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9516

발의연월일: 2023. 1. 17.

발 의 자:최기상・기동민・김성환

김영배 · 김정호 · 박상혁

신정훈 · 이동주 · 임호선

조오섭 · 조응천 의원

(11일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그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시행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집중호우, 태풍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의 지연 발송은 이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음.

호우, 태풍 등 기상과 관련된 주의보 및 경보는 기상청이 발표하고 있으므로,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긴급재난문자 발송권자인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호우, 태풍 등을 사전에 예측한 기상청도 주의보 및 경보 발표와 함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이 재난 대응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됨.

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 당시 뒤늦게 발송되었던 지진재난문자의

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, 같은 해 법률 개정을 통해 지진 관련 재난문자를 기상청이 보내도록 하여 적시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.

이에 기상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호우, 태풍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기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38조의2제5항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2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3항 및 제4항"을 "제3항부터 제5항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3항 및 제4항"을 "제3항부터 제5항까지"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 중 "제7항"을 "제8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2항(종전의 제11항) 중 "제7항과 제8항"을 "제8항과 제9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3항(종전의 제12항) 중 "제3항 및 제4항"을 "제3항부터 제5항까지"로 한다.

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의 경우에 기상청장이 직접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의2(재난 예보·경보체계	제38조의2(재난 예보・경보체계
구축·운영 등) ① ~ ④ (생	구축·운영 등) ① ~ ④ (현행
략)	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
	우 또는 태풍의 경우에 기상청
	장이 직접 제3항 각 호의 조치
	를 요청할 수 있다.
⑤ <u>제3항 및 제4항</u> 에 따른 요	⑥ <u>제3항부터 제5항까지</u>
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	
유자 또는 관리자, 전기통신사	
업자, 방송사업자, 신문사업자,	
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	
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	
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	
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	⑦
자,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	
제조업자는 <u>제3항 및 제4항</u> 에	<u>제3항부터 제5항</u>
따른 재난의 예보·경보 실시	<u>까지</u>
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	
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	
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	
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	

- ⑦ (생략)
- ⑧ 시·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·군·구종합계획을 기초로시·도 재난 예보·경보체계구축 종합계획(이하 이 조에서 "시·도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,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,행정안전부장 관은 필요한 경우 시·도지사에게 시·도종합계획의 보완을요청할수있다.
- ⑨·⑩(생략)
- ①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 구청장이 각각 시·도종합계획 과 시·군·구종합계획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<u>제7항과 제8</u> <u>항</u>을 준용한다.
- 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, 시·도종합계획, 시·군·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u>⑧</u> (현행 제7항과 같음)	
⑨ <u>제8항</u>	
<u>.</u>	
<u>⑩</u> · <u>⑪</u> (현행 제9항 및 제10	
항과 같음)	
12	
제8항과 제9	
<u> </u> <u> </u>	
③ 제3항부터 제5항까지	